

의안번호	제 583 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월 일 (제 325회)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3년 12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583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년 12월 2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사업 및 전시·판매 범위(안 제3조 및 제4조)
- 판매장 관리·운영의 위탁(안 제5조)
- 수탁자의 의무(안 제6조)
- 사용료(안 제8조)
- 판매장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(안 제11조 ~ 안 제14조)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판매장”이라 한다)은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(남문로 2가)에 둔다.

제3조(사업)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·판매
2. 중소기업청 추천 상품 등의 전시·판매
3.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
4. 중소기업제품 전국 판매망 운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사업
5. 그 밖에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

제4조(전시·판매품의 범위) 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및 특산품
2.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제품 및 특산품
3.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산물(가공식품 포함)
4. 도 전략산업 및 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
5. 비교 전시·판매를 위한 타 시·도 및 외국의 중소기업제품, 특산품 등
(도지사가 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)

제5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 수탁자는 판매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,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
③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위탁의 취소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판매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6조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위반한 때
2.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8조(사용료) ①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.
② 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부방법 등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관리 · 운영비) ① 판매장의 관리 ·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 ·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②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판매장 관리 ·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.
③ 판매장 관리 ·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한다.
④ 관리 ·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판매장의 관리 · 운영규정) 수탁자는 판매장 관리 ·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·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판매장운영위원회 설치) ①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도 경제통상국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은 도 본청의 기업유치 지원과장과 시 · 군의 부시장 · 부군수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⑥ 도지사는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회 심의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시 · 판매 입점업체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
2. 판매대금(수수료)에 관한 사항
3. 판매장 관리 · 운영규정 제 · 개정 등 승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, 정기회는 매년 2월에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실비보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 법령 발췌

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

-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법

제26조(판로지원사업)

-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허가할 수 있다.
 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 · 수익허가의 방법)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8. 해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및 특별자치도, 시 · 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·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 ·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
제14조(사용료)

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□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

제23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

사용료의 요율, 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□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

제3조(사업)

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4.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·운영

9. 지식경제부장관, 중소기업청장, 충청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위치 :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
- 사업기간 : 2013 ~ 2016(3년)
- 내용 :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따라, 인건비, 매장 관리비, 판촉비, 시즌 인테리어 등 제비용

3. 관련조문 : 안 제9조(관리 · 운영비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전시판매장 관리 · 운영('14. ~ '16)
 - 판매장 개장 : '13. 12월(예정)/ 지하1 · 지상1~4층(1035.87m^2)

나. 추계 결과

- 판매장 관리 · 운영('14 ~ '16)
 - 660백만원(인건비 456, 판촉비 및 활동비 45, 시즌인테리어 60, 운영비 99)

다. 재원조달방안

- 국비 330백만원, 도비 330백만원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‘14년)	2차년도 (‘15년)	3차년이후 (‘16년)	계
세 입	-	-	-	-
세 출	220	220	220	660
판매사원 인건비	152	152	152	456
판촉비 및 판촉활동비	15	15	15	45
시즌 인테리어비	20	20	20	60
판매장운영비	33	33	33	99
재원 조달	220	220	220	660
의존 재원	소 계	110	110	330
	보조금	110	110	330
	지방교부세	-	-	-
자체 수입	소 계	110	110	330
	지방세	96	96	288
	세외수입	14	14	42
지방채	-	-	-	-
기금	-	-	-	-
특별회계				
△△ 특별회계	-	-	-	-
△△ 특별회계				
구군비				
기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-			